(뒤쪽) 작성방법 ※ 이 서식은 ｢외국환거래법｣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손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< 다 음 > ｢법인세법｣ 제1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(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164조의2제1항제3호) 1. ① 연번 란에는 ｢법인세법｣ 제121조의2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별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합니다. 2. ② 법인명란에는 손실거래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의 상호를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(full name)으로 적습니다.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. 3. ③란은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국문으로 적고, ④란은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. 4. ⑤란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(9자리)를 적습니다. ※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5. ⑥란은 해외현지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의 직접･간접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. 6. ⑦란은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제출대상 손실거래 수를 적습니다. 7. ⑧란의 일련번호는 손실거래별로 순서대로 부여합니다. 8. ‘2. 손실거래 명세’의 ‘①-1 연번’에는 ‘1. 손실거래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인적사항’의 연번 중 손실거래 명세를 작성할 해외현지법인의 연번을 적습니다 9. ⑨ 손실 구분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√ 표시 합니다. 구분 내용 내국법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(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) 해외현지법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(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) 10. ⑩ 제출 구분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√ 표시 합니다. 구분 내용 거래건별 거래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인 경우 누적손실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1. ⑪ 시작일란은 손실거래가 최초로 발생한 날, ⑫ 종료일란은 손실거래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각각 적습니다. 다만, 손실거래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기중에 시작(종료)되는 경우에는 시작일(그 손실거래 종료일)을 적습니다. 12. ⑬ 손실거래금액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,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실거래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 13. ⑭ 산출기준란은 ⑬ 손실거래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에 √ 표시 합니다. 14. ⑮ 거래종류(⑯ 코드)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 구분코드 11 12 13 14 15 19 자산관련 자산매입 자산처분 자산증여 자산평가 자산감액 그 밖에 자산관련 거래 구분코드 21 22 23 29 부채관련 부채인식 부채평가 부채상환 그 밖에 부채관련 거래 구분코드 31 32 33 34 39 자본거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그 밖에 자본거래 15. ⑰ 손실거래 내용란은 손실거래내용(손실 구분이 해외현지법인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정보를 포함) 및 손실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100자 이내로 적습니다.